

2021년 우크라이나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체계 구축 보조사업자(협력대학) 과업지시서

과업 지시 주요 내용

- 방한연수 운영
- 교육과정 운영 및 양성과정 제반 사항 컨설팅

□ 사업 개관

구분	주요내용
대학명	쉐브첸코 키예프국립대학교
사업유형	교육기관협력형
과정유형	비학위과정(1년)
개설이유	우크라이나 내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운영
주요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과정 이수시 현지 중등학교 한국어 양성과정 이수증 발급 (현지 교육과학부에서 인정하는 이수증임) ▪ 향후 우크라이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교사로 채용 시 유리한 조건
선발인원	17명('22. 8월 이수 예정)
현지대학 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여년간 한국어를 교육해 오고 있는 기관으로써 한국어학 관련 교육과정 편성이 체계적이고 현지인 교수 요원 수준이 높은 대학임 ▪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연수생들에게 접근성이 좋으며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학임 ▪ 한국인 교원이 동 연수과정을 담당하고 있어 상호 의사소통 등 사업 수행이 원활함

□ 사업 주요 일정

- 모집 공고 및 접수 : 2021. 10. 18.(월) ~ 11. 15.(월)
- 심사 및 선발 : 2021. 11월
- 중간점검 및 평가 : 2022.3월
- 방한 연수 운영 : 2022. 7월
- 최종 보고서 제출 및 평가 : 2022.8월

□ 주요 교육과정

구분	현지 대학	기 개발된 콘텐츠 활용 온라인 연수	합계
사용언어	우크라이나어(러시아어)/한국어	한국어	
시수	70시간	70시간	140 시간
과목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온라인 수업(40시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어학(10), - 한국어교육학(18), - 언어학(4), 기타(8) ■ 집합 수업(30시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어학(8), - 한국어교육학(4), - 참관 및 실습(10), - 한국문학 및 문화(8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온라인 수업(70시간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한국어학(32시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한국어의 음운적 특성(9시간) -한국어의 문법적 특성(9시간) -한국어의 어휘적 특성(6시간) -맞춤법, 띄어쓰기, 관용표현(8시간) 2) 한국어교육학(38시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한국어 말하기, 듣기 교수-학습전략 -한국어 읽기, 쓰기 교수-학습 전략 -한국어 수업 구성법 등 	

□ 주요 과업 이행 조건

주요 과업	이행 조건
필수 인력 및 전용시설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크라이나 현지 대학에 한국어 교육과정 컨설팅 및 온/오프 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확보 ○ 컨설팅 또는 강의에 참여하는 인력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한국어 교육경력 필요 ○ 온/오프 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 시설 구비
방한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한 연수 기간 중 연수생에게 24시간 생활 지원 서비스 인력 배치 ○ 방한 연수 기간 중 한국어 외에 우크라이나어(러시아어) 또는 영어로 생활 지원 ○ 방한연수시 연수생 안전 확보 및 만족도 높은 연수 교육과정 운영
과업 수행 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착수보고 :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 ○ 중간보고 : 사업 착수 후 4개월 이내 ○ 최종보고 :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(정산서 포함) ○ 수시보고 : 긴급사항 또는 특이사항 발생,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 요청시 등

□ 일반 조건

- 협력대학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과의 합의에 따라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
- 협력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. 사업계획서에는 예산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,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에서는 협력대학에 대하여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력대학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- 협력대학은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·대여·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,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협력대학이 제출한 최종 산출물은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의 소유로 하며, 협력대학은 본 과업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를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